

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

■ 제도개요

- **근 거** :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,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
- **목 적**
 - 각종 개발사업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시행 전 미리 예측·평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사업계획에 반영
- **평가대상** : 총면적 10만㎡ 이상 건축물사업 등 11개 분야 26개 사업
- **시행시기** : 사업의 승인(인가·허가 등)전
- **평가절차** : 3단계
 - 작성계획서(평가항목 설정) → 평가서초안(주민의견 수렴) → 평가서(심의의결)
- **평가항목** : 대기, 수질, 소음, 일조장해 등 6개 분야 24개 항목
- **평가방법** :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(심의의결)
 - 위원회 구성 : 분야별 전문가 등 60명(위원장 : 기후환경본부장)
 - 운 영 : 안건마다 분야별 전문가 15~16인으로 구성 심의의결

■ 운영실적

- **환경영향평가서** : '12년 11건 접수(3건 완료, 8건 진행중)

(단위 : 건)

| 구 분 | 소 계 | '02 | '03 | '04 | '05 | '06 | '07 | '08 | '09 | '10 | '11 | '12 |
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접 수 | 134 | 4 | 6 | 11 | 20 | 17 | 19 | 20 | 11 | 10 | 5 | 11 |
| 완 료 | 118 | 4 | 6 | 11 | 20 | 17 | 19 | 19 | 10 | 6 | 3 | 3 |
| 진 행 | 16 | 0 | 0 | 0 | 0 | 0 | 0 | 1 | 1 | 4 | 2 | 8 |

- **환경보전방안서** : '12년 기준 14건(완료 12건, 진행 2건)

【 환경보전방안 】

- **목 적** :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사업계획 및 협의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생태면적률, 녹지 등 환경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검토·협의
- **대 상** : 기 협의완료 사업 규모 30% 미만 증가 또는 협의내용 변경사업

- 사후관리 : 1년 2회(상·하반기) 실시 ※ '12년 : 41개 사업장 점검
 - 점 검 반 :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, 환경정책과 합동 점검
 - 점검내용 : 생태면적률, 신·재생에너지 설치 등 항목별 협의내용 이행여부
 - “원전하나 줄이기 사업”과 투명행정 구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
 - 신·재생에너지 : '12년 6%(에너지 사용량) ⇒ '13년 8% ⇒ '14년 10% 이상
 - LED 조명 : '12년 25%(조명기기 부하량) ⇒ '13년 35% ⇒ '14년 50% 이상 등
- ※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고시 변경('12.5.31 개정, 7.1 시행)

【 적용현황 】

- 신·재생에너지 : 노량진수산물시장 현대화사업 10.1% 등 11개 사업
- LED 조명 : 파르나스타워 증축 61.7% 등 11개 사업

■ 향후계획('13년)

-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에너지관련 기준강화('14년 목표 조기 추진)
 - 신·재생에너지 : 현 에너지사용량의 6% 이상 ~~'13년 목표 8% 이상~~ 10%이상
 - LED 조명 : 현 전력부하량의 25% 이상 ~~'13년 목표 35% 이상~~ 50%이상
- 건축물 및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변경고시 : '13. 5월(7월 시행)
-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추진 : '13.1~'13.8
 - 환경영향평가법 전부 개정('12.7월)에 따라 용어 등 수정
- 평가서 작성대행자 교육 실시 : '13.5월
 - 양질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작성대행자 대상 교육 실시
-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 실시 : 상·하반기 2회
 - 협의완료후 착공한 사업장 협의내용 이행여부 심의위원과 합동점검 실시